

최고경영자과정 운영규정

규정 · 소관 최고경영자과정 · 현행 규정

개정 2026. 8. 31. · 시행 2026. 9. 1. (현행 판)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383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0. 오후 9:51:55 · 이후 개정되었을 수 있으니 시행 여부는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

이 규정은 최고경영자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

이 규정은 삼육대학교 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(이하 “과정”이라 한다)의 입학절차 및 운영방법에 적용한다.

제3조(사업)

이 “과정”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행한다.

1. 최고경영자의 교육훈련
2. 경영정보의 교류
3. 지역사회와의 협력사업

제2장 입학 및 수료

제4조(입학정원)

이 “과정”의 입학정원은 “과정”의 주임교수(이하 “주임교수”라 한다)의 발의로 “과정”의 운영위원회(이하 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“위원장”이 확정한다. <개정 2026-01-05>

제5조(지원자격)

이 “과정”의 지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공.사 기업체 대표 및 임원
2. 정부기관 및 공공기관의 고위급 인사
3. 지방자치단체의 대표 및 임원
4. 사회단체의 대표 및 임원
5. 기타 총장이 인정하는 사람

제6조(지원서류)

이 “과정”의 입학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수강지원서(소정양식)
2. 장학생 선발 기준에 필요되는 기타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 <개정 2026-01-05>

제7조(전형방법)

이 “과정” 입학전형은 서류전형으로 한다.

제8조(과정의 구성)

이 “과정”은 정규수업 및 국내외 현장학습 등으로 구성한다.

제9조(수료증 발급 등)

- ① 이 “과정” 수료자에게 별지 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발급한다.
- ② 기수료자나 수업일수가 부족하여 미수료된 자 중에서 본인이 재수강을 원할 경우 차기 과정에 등록하여 재수강할 수 있다.

제3장 조직 및 재정

제10조(조직)

“과정”의 운영은 대학원장의 통솔아래 “주임교수”가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기획·제정 등을 총괄하며, 대내외 행정업무는 최고경영자과정 담당자가 수행한다. <개정 2026-01-05>

제11조(운영위원회)

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“운영위원회”를 두며, “운영위원회 위원장”(이하“위원장”)이라 한다)은 대학원장으로 하되 유고시 주임교수로 한다. 위원은 대학원장(위원장), 주임교수(서기), 교무처장, 기획처장, 재무처장, 대학원팀장, 담당자(과장)로 한다. <개정 2025-01-06>

1. 과정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
2. 원생의 입학 및 수료에 관한 사항
3. 원생의 장학금 및 상벌에 관한 사항
4. 기타 필요한 사항

제12조(징수기일)

수강료의 징수기일은 “위원장”이 정하되 과정의 개시 전에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13조(수강료의 반환과 감면)

- ① 이미 납부한 수강료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부득이한 사정으로 수업 참여가 어려운 수강생은 대학원 시행세칙 제3장 등록 제14조에 의해 반환할 수 있다. <개정 2026-01-05>
- ② 이 “과정”의 수료생 및 본 대학(원) 졸업자에게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. 장학금 수혜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운영한다. <개정 2026-01-05>

제14조(상벌)

- ① 이 과정 이수에 우수성이 인정되고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에게는 포상을 수여한다.
- ② 수강생이 “과정”운영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수강생의 본분과 품위에 어긋난 행위를 함으로써 “과정”의 사업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, “위원장”은 해당 수강생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부여한 후 수강자격을 박탈하거나, 일정 기간 수강을 제한할 수 있다.

제15조(기타)

동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. <개정 2026-01-05>

부칙

- 1.본 규정은 2019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- 2.본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3.본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4.본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